

# 2019년 제1차 「기업구조혁신펀드」 위탁운용사 선정계획 공고

2019년 제1차 「기업구조혁신펀드」 위탁운용사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## 1. 선정개요

항 목	블라인드 펀드												
위탁운용 금액	<b>총 1,750억원 이내</b> (성장사다리펀드 40.39억원 포함)												
선 운 용 사 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총 3개사 이내</li> </ul> <div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right: 20px;">(단위: 개, 억원)</div> 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-left: auto; margin-right: auto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 style="background-color: #d9ead3;"> <th style="padding: 5px;">선정 운용사 수</th> <th style="padding: 5px;">출자금액</th> <th style="padding: 5px;">최소 결성금액</th> <th style="padding: 5px;">출자비율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padding: 5px;">1</td> <td style="padding: 5px;">750</td> <td style="padding: 5px;">1,500</td> <td style="padding: 5px;">50.0%이내</td> </tr> <tr> <td style="padding: 5px;">2</td> <td style="padding: 5px;">500</td> <td style="padding: 5px;">1,000</td> <td style="padding: 5px;">50.0%이내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운용사별 출자금액은 선택적으로 제안하되, 최종 선정결과에 따라 실제 배정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</li> </ul>	선정 운용사 수	출자금액	최소 결성금액	출자비율	1	750	1,500	50.0%이내	2	500	1,000	50.0%이내
선정 운용사 수	출자금액	최소 결성금액	출자비율										
1	750	1,500	50.0%이내										
2	500	1,000	50.0%이내										
출 자 대 상 투 자 기 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기업재무안정 경영 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</li> <li>○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경영참여형 사모 집합투자기구 및 창업·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</li> <li>○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</li> </ul> <p style="font-size: small; margin-top: 5px;">* 본 계획에 따라 선정된 위탁운용사가 관련법규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투자기구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투자기구에 대한 운용 자격을 갖추고 있고, 본 펀드의 운용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결성 전까지 신청 투자기구에 대한 변경 가능</p>												
운 용 사 신 청 자 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「출자대상 투자기구」의 관련법규에 따른 펀드결성과 업무의 집행이 가능한 제안서 접수일 현재 설립된 법인</li> </ul>												
운 용 사 선 정 방 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홈페이지* 공개모집 공고를 통해 한국성장금융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 - 운용사, 운용인력, 펀드운용계획 등을 종합평가하여 선정</li> </ul> <p style="font-size: small; margin-top: 5px;">* 한국성장금융 : <a href="http://www.kgrowth.or.kr">www.kgrowth.or.kr</a></p>												
접 수 일 시	2019년 7월 31일(수) 09:00 ~ 16:00												
심 사 결 과 발 표	2019년 8월 30일												
펀 드 결 성 시 한	최종 선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  * 단,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3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												

## 2. 투자대상

### □ 주목적 투자대상

- 법인 형태의 **중소·중견기업**(대기업은 제외)을 대상으로 투자기간 내 아래의 주목적 투자대상에 의무투자비율 이상을 투자하여야 함

#### 주목적 투자대상에 대한 의무투자비율

- 아래 ①, ②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

#### ① 사전적·사후적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**약정총액의 60%이상** 투자

- 단, 사후적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재기지원목적으로 약정총액의 30%이상 투자

#### ② 중소기업에 **약정총액의 25%이상** 투자

주) 주목적 투자대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공고문 내 붙임자료(Page 5) 참조

- 구조조정 기업(사전적·사후적)에 **신규자금 형태의 부채투자**를 하여 투자기간 내 원금 전액이 회수되는 경우, 원금에 한하여 재투자 허용(**약정총액의 30%이내**)

- 단, 재투자 금액은 사후적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재기지원 목적으로 투자하여야 함

- 투자기간 종료 시점에 **민간 매칭금액\***이 기업구조혁신펀드 및 성장사다리펀드(이하 “모펀드”) 출자금액을 **상회**하여야 함

\* 매칭금액 인정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성장금융이 정함

## 3. 주요 출자조건

항 목	세부내용												
최 소 결 성 금 액	○ 최소 1,000 ~ 1,500억원 이상												
모 펀 드 출 자 비 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<b>약정총액의 50% 이내</b>(사후적 매칭 선택 시 최대 98% 이내)</li> <li>○ 순위별 모펀드 출자비율과 동일한 비율로 출자(필수)</li> </ul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선순위</th> <th>중순위</th> <th>후순위</th> <th>순위의외<sup>주)</sup></th> <th>합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출자비율</td> <td>39.2%</td> <td>6.9%</td> <td>7.7%</td> <td>46.2%</td> <td>100.0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 style="font-size: small;">주) 손익의 분배 시 선·중·후순위에 영향을 받지 않고, 독립적으로 분배받는 순위</p>	구 분	선순위	중순위	후순위	순위의외 <sup>주)</sup>	합계	출자비율	39.2%	6.9%	7.7%	46.2%	100.0%
구 분	선순위	중순위	후순위	순위의외 <sup>주)</sup>	합계								
출자비율	39.2%	6.9%	7.7%	46.2%	100.0%								
운 용 사 출 자 금 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약정총액의 2% 이상</li> <li>○ 운용사는 최소 모펀드와 동일한 순위와 비율로 출자 하여야 함</li> </ul>												

항 목	세부내용	
존 속 기 간	○ 펀드 결성일로부터 10년 이내	
투 자 기 간	○ 펀드 결성일로부터 5년 이내	
관 리 보 수	○ 주목적 투자 여부 및 투자 잔액에 따라 차등 적용	
	○ 주목적 투자 중, 주력산업(자동차부품·조선기자재업종)에 대한 구조혁신 목적으로 투자한 경우, 모펀드가 지급하는 '주목적 투자 관련 관리보수'를 0.2%p 상향	
	구 분	투자잔액
	투자기간 이내	주목적 투자 × 연1.7%(1.9%) 이내 비주목적 투자 × 연1.3% 이내
	투자기간 초과	주목적 투자 × 연1.6%(1.8%) 이내 비주목적 투자 × 연1.2% 이내
	미투자잔액	연1.1% 이내
	-	-
성 과 보 수	기 본	○ 기준수익률(IRR 6%) 초과 시 초과이익의 20% 이내에서 지급
	선 택	○ Full Catch-up : 펀드 수익률이 IRR 8% 초과 시 펀드 수익의 20% 이내에서 지급 - 단, Full Catch-up 선택 시 상기 관리보수율보다 하향하여 적용할 예정이며, 관련 취지를 반영하여 운용사 별도 제안 가능
추 가 성 과 보 수	○ 기준수익률(IRR 6%) 초과 시 모펀드에 지급될 초과이익(6%를 초과하는 이익)을 재원으로 추가 성과보수 지급 : 최대 +20% 이내 - <u>사후적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재기지원목적 투자비율 40%이상 투자</u> : 최대 +10% 이내 - <u>주력산업(자동차부품·조선기자재업종)에 대한 구조혁신 목적으로 20%이상 투자</u> : 최대 +10% 이내 * 선정 후 출자자 및 운용사 간 협의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	
성 과 공 유	○ 운용사가 지급받은 추가 성과보수를 재원으로 투자기업과 운용성과를 공유하는 방안을 제안하도록 할 예정	
이 익 배 분 및 손 실 분 담 구 조	○ 수익률별 이익배분 구조 - <u>기준수익률 이하</u> : 출자자 지분율에 따라 배분 - <u>기준수익률 초과</u> : 초과이익(GP 성과보수 차감전) 중 순위별 비중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일정비율을 후순위 출자자(최소 6.5%이상) 및 중순위 출자자(최소 3.5%이상)에게 우선 배분하고, 잔여 초과이익을 순위별 출자자의 지분율에 따라 배분하는 구조로 제안 (순위의 출자자는 초과이익 중 순위의 비율만큼 수취후 배분) ○ 펀드의 운용결과 손실 발생 시 「 <u>후순위 출자자 → 중순위 출자자 → 선순위 출자자</u> 」 순으로 부담 (순위의 출자자는 손실금액 중 순위의 비율만큼 부담)	

항 목	세부내용
납 입 방 식	○ 수시납 또는 분할납
출 자 자 제 한	○ 출자자는 기관투자자 및 법인으로 제한 - 단, 개인출자자(운용사의 운용인력, 특수관계인 등) 및 기타 출자자가 책임 운용 강화 등 펀드운용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한국 성장금융과 협의하여 결정
수 탁 회 사	○ 한국성장금융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Pool에서 선정 ○ 펀드의 미투자자산 중 일부는 수탁계약에 따라 은행의 확정금리부 금융 상품에 운용 가능 ○ 펀드자산의 관리는 수탁회사와의 업무지시서를 통해서만 가능
회 계 감 사 인	○ 한국성장금융이 제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회계감사인 선정
펀 드 전 자 보 고 시 스템	○ 펀드 전자보고 시스템 사용 의무 ○ 펀드운용 등에 대하여 한국성장금융이 지정하는 전자문서 방식으로 보고 ○ 관련 시스템 구축 및 사용 비용은 운용사가 부담
핵 심 운 용 인 력	○ 핵심운용인력 총 3인 이상 참여 ○ 자격 요건 - 핵심운용인력 : 투자경력* 3년 이상 경력자 2인 이상이 참여하고, 투자 경력 5년 이상 경력자 1인 이상이 참여할 것 - 핵심운용인력의 투자경력 평균이 4년 이상일 것 * 투자경력 : 제출양식을 참고하여 산출하고 입증가능 하여야함 ○ 핵심운용인력 중 1인은 투자기간 만료 또는 약정총액의 60% 이상이 투자되기 전에는 신규로 결성되는 다른 펀드의 핵심운용인력 겸임을 제한 ○ 펀드결성 시 핵심운용인력은 정관(또는 규약)에 기재
기 타	○ 약정금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구조조정사업 등 한국수출입은행법에 해당되는 업무에 투자해야하며, 구체적 투자비율은 한국성장금융과 협의하여 결정 ※ 공고문 내 붙임자료(Page 6)를 참고 ○ 결성과정에서 보수구조 등 공고 조건에 대한 조정요청이 있을 경우, 펀드 조성목적 및 주요 출자조건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 가능 ○ 본 공고문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성장금융과 개별협의를 통해 결정

## 【붙임1】 주목적투자 관련 참고자료

### ■ 구조조정 대상기업 정의

구 분	대상기업 정의
사전적 구조조정 대상기업	(1)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(기업활력법) 대상기업
	(2) 기업재무안정PEF에 허용된 사전적 구조조정 대상기업* *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271조의27 제3항에 정의된 기업
	(3) “중기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” 공동운영 지침의 적용을 받는 기업
	(4) 기타 채권금융기관과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 등
사후적 구조조정 대상기업	(1)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된 기업 - 회생절차가 종료되었으나 변제대상으로 확정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80% 이상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 포함
	(2)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의 관리절차 <sup>주)</sup> 가 개시된 기업
	(3)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의 관리절차가 개시된 기업

주) 기업구조조정촉진법(18.10.16 시행)에 따른 워크아웃 절차를 의미하며, 향후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일몰시 워크아웃 절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법령 등이 마련되는 경우 해당 법령 등에 따른 워크아웃 절차를 포함

### ■ 재기지원 목적 투자 정의

구 분	투자의 유형
㉑DIP Financing	○ 대상기업에 대한 신규 금융지원을 하는 경우 - 자금대여 및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발행하는 사채 인수 포함
㉒ 회사 보유자산 매입	○ 대상기업의 자산매각, 이에 수반되는 담보권 및 그 밖의 권리의 매입 - Sale and Lease Back, 대상기업에 우선매수권, Call Option 또는 이와 유사한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
㉓조기할인변제	○ 회생절차 개시 후 추가 변제 시 채권단 등의 합의하에 절차종결하고자 하는 기업에 투자
㉔M&A	○ 대상기업이 인수 합병(M&A)을 통하여 정상화 시도하는 경우
㉕NPL	○ 대상기업의 부실채권을 매입한 후 ㉑,㉒,㉓,㉔를 통해 기업의 재기를 지원하는 추가 투자기회를 확보하는 경우

## 【붙임2】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부합하는 투자

■ 운용사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으로 약정금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투자하여야 하며, 구체적 투자비율은 한국성장금융과 추후 협의하여 결정함

- ① 한국수출입은행이 포함된 채권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대한 채권의 인수 또는 동 기업 앞 유동성 공급 등의 투자
- ② 한국수출입은행법 제20조의2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3에 부합하는 투자

## 4. 선정 배제, 취소 기준

### □ 선정 배제

- 법령 등의 준수와 관련하여 운용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, 동 사유로 펀드의 적법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  - 제안시점 현재 법령 위반 또는 시정 명령 미이행 상태에 있는 경우
  - 과거 5년 이내에 법령위반으로 관계 감독기관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바 있거나, 시정명령 이행 실적이 양호하지 않은 경우
- ※ 다만, 본 펀드 운용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제재내역인 것으로 판단될 경우 선정 배제사유에서 제외 가능
- 회사 및 펀드 운영상 도덕적 해이 또는 제3자 경유 등을 통해 사실상 법령을 위반한 상태라고 판단되는 경우
- 자산건전성이 취약하거나, 최근 2년내 도덕적 해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위탁운용사로서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투자업체 발굴 및 투자의사결정 등 펀드 운용과정에서 대주주 등 외부의 압력으로 위탁운용사로서 독립적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제안 펀드의 핵심운용인력과 운용사 대표이사가 과거 5년 이내에 감독당국으로부터 감봉이상의 제재를 받은 경우
- 위탁운용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·형사상 소송의 진행, 리스크 관리, 컴플라이언스 등의 위험관리체계 부재, 경영권 불안정, 운용인력의 잦은 이동 등으로 펀드의 안정적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한국성장금융의 운용 펀드가 출자한 펀드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의무의 불이행 행위 등을 한 위탁운용사로서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고의적 누락 또는 중대한 오류 등으로 중요한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, 허위사실이 기재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

### □ 선정 취소

- 펀드의 최소결성금액에 미달하는 경우
- 한국성장금융이 결정한 출자조건을 위탁운용사가 수용하지 않아 규약(정관)

협의 등 후속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

- 위탁운용사가 타 출자자의 출자확약서를 제출하였으나, 그 사실이 허위 또는 의도적인 조작으로 밝혀지는 경우
- 위탁운용사가 법령위반 또는 시정명령 미이행 상태이거나 기타 우회적인 방법 등으로 사실상 법령위반 상태에 있어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
- 위탁운용사 선정 후 결성총회까지 선정 배제 사유 또는 당해 펀드의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
## 5. 제재 사항

### □ 제재 사항

- 결성 시한 내 펀드결성을 완료하지 못한 위탁운용사 또는 선정이 취소된 위탁운용사에 대해서는 각각 결성시한 또는 선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출자 제한
  - 다만, 관련 법규 상의 제한 등의 사유로 인해 펀드결성이 지연될 경우 제재 부과 대상에서 제외 가능
- 선정된 펀드가 존속기간 중 규약(정관) 상 투자 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위탁운용사에 대해 투자기간 종료일 또는 펀드 해산일로부터 1년 동안 출자 제한하며, 기지급된 관리보수를 환수하거나 성과보수를 미지급할 수 있음
- 선정된 펀드 중 출자확약서 등의 제출에 따라 우대를 받았으나, 그 사실이 허위 또는 의도적인 조작으로 밝혀지는 경우 5년간 출자 제한하고, 실제 출자금액이 당초 제출한 출자확약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1년의 범위 안에서 출자 제한
- 출자대상 투자기구 결성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최초 투자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출자대상 투자기구를 해산할 수 있음

## 6. 기타 사항 등

### □ 기타

- 제안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대한 오류 등의 허위사실 기재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, 선정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함
  - 특히, 운용사 및 운용인력의 투자실적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허위, 조작하여

제출하거나 누락한 것이 밝혀지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, 선정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하며 확인일로부터 5년간 출자 제한함

- 접수일시 내 접수처 도착분에 한해 접수하며, 접수 후 제안사항 변경 및 추가자료 제출 등은 허용하지 않음
- 제안서 작성기준일은 공고일로 하며, 핵심운용인력 등의 참여인력은 접수일 현재 기준으로 함

## 7. 선정절차 및 일정

### □ 선정 절차

- 공고 → 제안서 접수 → 1차심사(서류) → 현장실사 → 2차심사(구술) → 최종선정
- 1차 심사를 통과한 제안건에 한해 현장심사 및 심사 실시

### □ 선정 일정

일 자	내 용	비 고
2019.07.31.(수)	제안서 접수	접수시간 09:00~16:00
2019.08.30.(금)	최종 선정결과 발표	개별 통보

주) 세부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### □ 심사(서류) 평가기준 : 출자 설명회에서 안내 예정

## 8. 지원방법

### □ 지원방법

- 한국성장금융이 정하는 제출서류 및 그 내용을 포함한 USB메모리 1개를 지정된 접수처에 접수일시 내 제출
  - ※ 「제출서류 및 관련 양식」은 공고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
(관련 양식은 출자 설명회 일자까지 별도 공지 예정)
- 2차심사(구술) 대상으로 선정된 운용사는 별도 PT자료(8부)를 제출
  - 분량 : 20페이지 이내 (발표 당일 PT자료, 파일 별도 지참)

□ 출자설명회

○ 일 시\* : 2019년 7월 12일 14:00 ~

\* 단, 출자설명회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가능하며, 변경 시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예정

○ 장 소 : 한국자산관리공사 세미나실(20층)  
(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)

9. 접수처 및 문의방법

□ 접수처 :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(주)

(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 한국거래소 별관 4층)

□ 문의방법 : 한국성장금융 구조혁신팀 (02-2090-9121)

E-mail : ts12.kim@kgrowth.or.kr

2019년 7월 9일

**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(주)**

※ 공고일, 접수일 등 일정은 내·외부사정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